

세무와회계저널
제11권 제2호 2010년 6월 pp.209~237
한국세무학회

외국은행 지점의 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전병욱* · 최보람**

<요 약>

소득이전을 통한 국제적 조세회피와 함께 국가 간의 과세권 경합으로 인한 이중과세의 가능성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고 국가 간의 원활한 조세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다. 최근 2008년과 2009년의 세법개정을 통해 국제조세 분야의 법인세 세무조정과 관련하여 실무상 해석 및 적용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여러 항목들에 대한 과세상의 개선이 있었지만, 아직도 너무 복잡하거나 납세자의 이해를 기대하기 어려운 다수의 관련 규정들이 있다. 본 연구가 외국계 기업과 은행업의 중복적 특성 때문에 세무조정이 매우 복잡한 외국은행 지점의 과세제도를 정리한 후에 이를 바탕으로 제시한 과세상의 개선방안들은 아래와 같다.

첫째, 과소자본세제와 관련하여 다국적기업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손금불산입 과세처분의 기준인 차입금 배율 규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과세상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차입금의 개념을 명확하게 하고, 외국은행의 업무관행을 존중하고 실무상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차입금 잔액을 외화환산이 이미 반영된 원화 기준 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은행법의 취지를 존중하여 을기금을 차입금이 아닌 자본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과소자본세제의 적용을 배제하는 비교가능한 차입규모 및 조건의 범위를 법령에 포함시켜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향상시키고 입증책임의 부담을 완화시켜야 할 것이다.

둘째, 본점경비의 배부제도와 관련하여 배분대상경비의 핵심적 개념인 합리적 관련성을 명확하게 하여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과세관청이 안내문을 작성·교부하고 관련고시의 예시규정을 더욱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재량권을 축소해야 할 것이다. 또한, 외국은행의 환율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공통경비에 연평균환율 대신 발생일이나 지급일의 환율을 적용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장래에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과세권을 원활하게 확보하기 위해 국내에서 발생한 공통경비의 배분기준과 구체적인 계산방법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셋째, 간주자본제도와 관련하여 외국은행 본점과 국내지점의 결산일이 다를 경우 법령해석의 공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납세자의 혼란과 사후적인 과세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관련법령을 보완해야 할 것이고, 본점의 결산이 확정되어야 정확한 법인세 신고가 가능한 외국은행 지점의 업무관행을 존중하여 신고기한 내에 납부한 세액이 본점의 결산확정으로 증가하더라도 당초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가산세를 면제해야 할 것이다.

*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조교수, bwjun@uos.ac.kr, 02-2210-5791, 주저자

**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박사과정, bomi222@uos.ac.kr, 010-2338-9298, 교신저자

마지막으로, 국제조세서식 제출 제도와 관련하여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재사항이 복잡한 다수의 서식을 작성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이미 작성하여 제출한 서식을 과세관청이 이후의 세무조사에서 다시 요구하여 과중한 납세협력비용이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서식의 간소화 및 한번 제출한 서식의 요청금지와 함께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를 제출자료와 관련한 질의에도 적용하는 것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외국은행 지점, 과소자본세제, 본점경비 배부, 간주자본지급이자, 국제조세서식 제출

I. 서 론

정부는 우리나라를 아시아의 금융허브로 도약시키기 위해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금융산업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¹⁾. 우리나라가 금융허브의 모델로 삼고 있는 싱가포르의 발전된 모습은 지난 십수년간 추진해 온 ‘아시아 금융허브 전략’ 재구축과 ‘국외 금융업 투자를 통한 글로벌 금융강국 도약’이라는 ‘금융 허브 앤드 스포크(hub & spoke) 전략’에 따른 것이다. 실제 지난 수년간 싱가포르는 대내적으로 금융회사나 헤지펀드들이 싱가포르 내에 동지를 트는 데 장애가 되는 모든 규제를 혁파하고, 과감한 세제 혜택을 제공했다. 그 결과 헤지펀드들이 싱가포르로 몰려 들고 세계적 금융회사가 싱가포르로 본점을 이전하는 작업을 추진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²⁾. 2008년의 전세계적 금융위기에 따라 형성된 금융산업에 대한 회의와 반성의 분위기로 인해 금융허브 정책의 추진을 재고해야 한다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으나, 정부는 위기를 겪는 선진국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견고한 보완장치를 마련해 우리나라를 동북아 금융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³⁾. 국제조세분야의 2008년과 2009년의 세법개정, 특히 외국은행 지점과 관련한 규정들의 대폭적인 개정은 이러한 정책취지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외국은행 지점의 세무조정은 외국계 기업의 특성과 은행업의 특성이 동시에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세무조정과는 별도의 추가적인 세무조정 사항을 검토해야 하는 복잡성을 갖는다. 외국계 기업에는 일반적으로 법인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조세조약의 규정이 모두 적용되어 세무조정 업무가 어렵고 복잡한 특성이 있고, 외국계 은행에는 금융업을 영위함으로써 인해 검토해야 하는 고유한 세무조정사항이 있으며, 추가적으로 외국은행 지점에는 동(同)지점에만⁴⁾ 적

1) 2008.1.9.자 매일경제신문 기사(“李당선인 금융은 산업...규제 확 풀어 키우겠다”) 인용

2) 2008.1.6.자 매일경제신문 기사([매경광장] 금융강국을 위한 4가지 제안) 인용

3) 김종창 금융감독원장. 2009.6.19.자 외국계 시장참가자 대상 업무설명회 ‘FSS SPEAKS 2009’ 개최사

4) 현재 한국씨티은행, SC제일은행은 ‘지점’이 아닌 ‘자회사’의 형태로 영업을 수행하고 있지만, ‘지점’에만 적용되는 세법 규정 외에 ‘외국은행’과 ‘은행업’에 적용되는 세법 규정은 유사하다. 본 논문에서는

용되는 특수한 세법 규정도 존재한다. 이러한 세무조정 복잡성으로 인해 세법의 제정과 해석을 담당하는 과세당국과 외국은행 지점의 세무담당자 및 세무대리인이 모두 업무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외국은행 지점에 적용되는 과세제도를 정리하고 동(同)과세제도의 문제점에 대하여 분석한 후에,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실무상의 유용성을 제공하고자 한다.

외국은행 지점에 적용되는 세무조정 항목 중 외국계 기업의 특성으로 인해 검토할 것은 과소 자본세제 및 정상가격 조정에 관한 문제가 있고, 그 밖의 형식적인 문제로 법인세 세무조정계산서 제출시 국제조세 서식의 제출의무 등이 있다. 또한, 금융업의 특성으로 인해 검토할 것은 각종 파생상품과 유가증권에 관한 세무조정이 있고, 지점의 특성으로 인해 검토할 것은 본점과의 공통경비 배분 및 손금산입에 관한 세무조정이 있으며, 외국은행 지점의 특성으로 인해 검토할 것은 간주자본 지급이자에 관한 세무조정이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먼저 제Ⅱ장은 외국은행 지점의 사업 현황과 최근 2008년과 2009년의 세법 개정을 통해 개선된 과세상의 문제점들을 정리하고, 제Ⅲ장은 현재 적용되고 있는 외국은행 지점에 대한 과세제도를 정리하고, 제Ⅳ장은 제Ⅲ장의 분석을 바탕으로 동(同)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제Ⅴ장은 연구의 요약과 결론을 제시한다.

Ⅱ. 외국은행 지점의 사업 현황 및 과세 연혁

이번 장에서는 국내에서 운영하는 외국은행 지점의 사업 현황 및 이들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이들에 대한 과세 연혁 및 최근 2008년과 2009년의 세법 개정을 통해 개선된 과거의 과세상의 문제점들에 대하여 논의한 후 이들에 대한 과세제도를 분석한 선행연구들과 비교한 본 연구의 의의에 대하여 논의하기로 한다.

1. 외국은행 지점의 사업현황⁵⁾

<표 1>과 같이 2009년 6월말 현재 16개 국가의 37개 외국은행이 지점의 형태로 우리나라에서 운영 중이고, 외국은행 지점의 2008년중(2008년말에는 38개 은행의 53개 지점) 당기순이익은 2.1조원으로 전년동기(0.4조원)에 비해 1.7조원이 증가하였다⁶⁾⁷⁾.

외국은행의 ‘지점’을 중심으로 과세제도를 분석하고자 한다.

5) 2009.6.30.자 전국은행연합회(<http://www.kfb.or.kr/cms.html?S=ACB>) 자료에서 검색한 것이다.

6) 2009.2.23.자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인용

〈표 1〉 2009년 6월말 현재 국내에서 지점의 형태로 운영 중인 외국은행

국 가	개 수	은행명
미국	5	J.P.Morgan Chase Bank, N.A., Bank of America National Association, 뉴욕멜론은행 (The Bank of New York Mellon), 와코비아은행 (Wachovia Bank), 스테이트스트리트은행 (State Street Bank and Trust Company)
일본	4	미쓰비시도쿄유에프제이은행, 미즈호코퍼레이트은행, 三井住友銀行 (미쓰이스미토모은행), 山口銀行 부산지점 (The Yamaguchi Bank, Ltd. Busan Branch)
영국	4	HSBC (The Hongkong and Shanghai Banking Corporation, Ltd), 골드만삭스인터내셔널은행(Goldman Sachs International Bank Seoul Branch), 모간스탠리은행 (Morgan Stanley Bank International Limited), 바클레이즈은행 (Barclays Bank PLC)
프랑스	4	칼리온은행 (CALYON-Bank), 비엔피 파리마은행, 유바프은행 (Union de Banques Arabes et Francaises), 소시에테제네랄은행 (Societe Generale)
중국	4	Bank of China, 中國工商銀行 (Industrial and Commercial Bank of China), 교통은행 (Bank of Communications Seoul Br.), 중국건설은행 (China Construction Bank)
싱가폴	3	디비에스은행 (DBS Bank Ltd.), 大華銀行 (United Overseas Bank, Ltd), 오버시차이니스은행 (Oversea-Chinese Banking)
네덜란드	2	ING Bank, N.V., 에이비엔암로은행 (ABN-AMRO Bank)
독일	2	도이치은행 (Deutsche Bank AG), 바덴뷔르템베르크 주립은행 (Landesbank Baden-Württemberg)
스위스	2	크레디트스위스은행 (Credit Suisse Bank), 유비에스은행 (UBS AG)
호주	1	호주뉴질랜드은행
캐나다	1	노바스코셔은행 (The Bank of Nova Scotia)
파키스탄	1	파키스탄국립은행 (National Bank of Pakistan)
필리핀	1	메트로은행 (Metropolitan Bank and Trust Company)
인도	1	인도해외은행
아일랜드	1	메릴린치인터내셔널은행 (Merrill Lynch International Bank)
이란	1	멜라트은행 (Bank of Mellat)
계	37	

7) 그 밖의 주요한 경영실적은 <표 2>와 같다.

〈표 2〉 외국은행 지점의 주요 경영실적

(단위 : 조원)

	총자산	대출채권 ^{*A}	자기자본 ^{*B}	자본금	당기순이익	ROA	NIM ^{*C}	은행수	지점수
'07.12.	148.6	35.4	8.5	3.6	0.4	0.26%	0.43%	36	50
'08.12.	306.2	44.0	14.7	5.2	2.1	0.82%	1.52%	38	53
증감	157.6	8.6	6.2	1.6	1.7	0.56%	1.09%	2	3

^{*A} 은행계정 대출채권 말잔 기준^{*B} 을기금 포함^{*C} 순이자마진

2. 최근의 세법개정을 통한 과세상의 개선 및 선행연구의 검토

국제조세 분야의 법인세 세무조정에 관한 문제를 분석한 선행연구들은 많지 않다. 서희열과 김영옥(2005)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과세제도를 소개하고 이에 대한 개괄적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오윤(2007)은 금융기관에 대한 고정사업장 과세에 대하여 은행업, 글로벌트레이딩 및 보험업으로 구분하여 국제적인 기준의 방향과 문제점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오윤(2007)의 연구는 부분적으로는 은행업의 성격을 반영한 내부거래와 지급이자 등의 과세제도의 특성을 논의했지만, 주된 분석대상은 국제조세분야의 과세원칙에 관한 것이었다. 이진영(2008)은 국제적 자본이동 증가에 따른 조세피난처 과세제도 및 과소자본세제에 대한 연구에서 2008년부터 시행된 금융업에 대한 과소자본세제 적용 방법 조정(금융업도 비금융업과 마찬가지로 과소자본세제의 차입금 배수를 3배로 조정)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이진영(2008)이 지적한 문제점은 2008.10.7.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해결되었는데, 그 밖에도 최근 2008년과 2009년의 세법 개정을 통해 학계나 실무계에서 지적했던 많은 문제점들이 해결되었다. 이하에서는 2008년과 2009년의 세법 개정을 통해 개선된 과세상의 문제점들을 정리하고, 선행연구들과 비교한 본 연구의 분석방향을 제시하기로 한다.

가. 과소자본세제와 관련한 과세상의 개선

(1) 금융업의 차입금 배수를 6배로 변경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6조는 내국법인 또는 지점과 같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외지배주주로부터의 차입금이 출자금액의 업종별 배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손금불산입하도록 규정하는데, 과소자본세제(thin capitalization)이라고 하는 동(同)규정은 자본금 대신 과다한 차입금으로 자본을 구성하여 이익규모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 \text{지급이자} \times \{ \text{총차입금} - (\text{출자금액} \times \text{업종별 배수}) \} \div \text{총차입금} \quad (1)$$

동(同)규정에서 금융업은 다른 업종에 비해 차입금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당초에는 업종별 배수가 6배였지만, 2007.12.31.자 동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2008.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업종별 배수를 3배로 개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갑작스러운 변화가 외국은행 지점들에게 큰 부담인 점과 금융업이 안정적인 외화유동성 공급의 원천인 점을 고려하여⁸⁾ 2008.10.7.

8) 그 밖에 스위스, 호주 등도 외국계 은행의 외환시장에서의 역할을 고려하여 금융업(6~20배)과 일반업종(2배)을 차등 적용하고 있는 점도 고려하였다.

자 동법시행령을 통해 금융업은 다시 업종별 배수를 6배로 개정하였다.

이상의 동법시행령 개정의 적용시기는 각각 2008.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와 2008.10.7.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인데⁹⁾ 대부분의 외국은행이 2008.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2008.10.7.이 포함되기 때문에 법령 개정으로 인한 불이익은 피할 수는 있었다. 그러나, 식(1)에서 총차입금과 출자금액은 “적수(積數)”의 개념이기 때문에 동(同)규정을 적용하는 다수의 외국은행 지점에 해석의 혼란을 일으킨 시행상의 문제점이 있었다.

(2) 자기자본 변동시 손금불산입액 계산 방법을 합리화

식(1)에서 사업연도 중에 감자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출자금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 적수계산의 취지와 맞지 않게 감자시에는 손금불산입액이 과다하게 되고 증자시에는 손금불산입액이 과소하게 산출되는 불합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자본금 변동이 있는 경우 ‘사업연도개시일~자본금변동일 전일’과 ‘자본금변동일~사업연도종료일’로 나누어 자본금을 적수로 계산한 후 합계하도록 계산 방법을 합리화하였다.

(3) 형제회사 등의 손금불산입액 계산 방법의 명확화

식(1)의 적용에서 외국주주 외에 외국주주가 50% 이상 출자한 외국법인이 포함된 경우에 과소자본세제의 적용방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식(1)로 계산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을 외국주주와 외국법인의 차입금 비율로 안분하여 배당으로 소득처분되는 금액을 계산하도록 하였다. 즉, 식(1)에서 외국주주와 외국법인의 차입금과 출자금액을 각각 D_1 , D_2 및 E_1 , E_2 라고 할 때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P) = 지급이자 $\times \{(D_1 + D_2) - 6 \times (E_1 + E_2)\} \div (D_1 + D_2)$ 이고
 배당으로 소득처분되는 금액 = $P \times \{E_1 \div (E_1 + E_2)\}$ 으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를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나. 간주자본이자와 관련한 과세상의 개선

이상에서 설명한 과소자본세제와 함께 2009.2.4.자로 신설된 법인세법시행령 제129조의3과 2009.3.30.자로 신설된 동법시행규칙 제63조의2는 동법기본통칙으로 운영하던 외국은행 본·지점간의 자금거래에 대한 손익계산 방법을 합리화한 것인데, 간주자본제도(deemed capitalization)

9) 2008.10.7.자 동법시행령 개정의 구체적인 적용시기는 <표 3>과 같다(부칙 제1조 및 제2조).

<표 3> 2008.10.7.자 개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의 적용시기

적용시기	① 2007.12.31.이전 과세연도	② 2008.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단, ③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③ 2008.10.7.이 속하는 과세연도 이후
금융업의 업종별 배수	6배	3배	6배

라고 하는 동(同)규정은 본점보다 자기자본비율이 낮은 지점이 이자비용 공제를 통해 이익규모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2009.2.2.자로 삭제된 (구)법인세법기본통칙 92-129-2는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자본금 계정상의 금액이 {국내지점의 총자산액 $\times$ 본·지점 전체의 (자기자본금 $\div$ 총자산액)}(이하 “a”) 으로 계산한 자본금추산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국내지점이 외국법인의 본점 또는 해외지점으로부터 공급받은 차입금 중 자본금추산액에 미달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과소자본세제와 간주자본제도를 동시에 적용하였다.

그러나, 2009.2.4.자 법인세법시행령 개정 등에서는 자본금추산액을 a와 같이 일률적으로 계산하는 대신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기능, 소유자산, 부담한 위험 등을 반영하여 BIS 비율을 적용한 간주자본금으로 계산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고, 과소자본세제와 간주자본제도 중에서 손금불산입 금액이 큰 것만을 적용하도록 하여 중복과세의 논란을 해결하였으며, 본점과 지점 소재지국의 자기자본비율을 계산할 때 회계처리 방법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본점의 회계처리 방법으로 합리적으로 조정한 자료를 비치·보관시 동(同)차이를 인정하도록 하여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시켰다.

다. 서식 작성과 관련한 과세상의 개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는 외국법인(또는 국내지점과 같은 고정사업장)이 법인세 확정신고를 할 때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되, 특정 외국법인은 동(同)제출의무를 면제하였다. 2009.2.4.자 동법시행령 개정에서는 동(同)제출의무의 면제대상을 기존의 ‘전체 재화거래 금액의 합계액이 50억원 이하로서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와 함께 ‘국외특수관계자별 재화거래 금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하로서 용역거래 합계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를 신설하여 외국법인의 부담을 완화시켰다.

라. 정상가격 적용과 관련한 가산세 규정의 개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는 외국법인 등이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을 할 때 특정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면제하였다. 2008.12.26.자 동법 개정과 2009.2.4.자 동법시행령 개정에서는 동(同)가산세 면제대상을 기존의 ‘신고된 거래가격과 정상가격과의 차이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의 과실이 없다고 상호합의절차의 결과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 및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사전승인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과실이 없다고 국세청장이 판정하는 경우’와 함께 ‘납세의무자가 소득세 및 법인세를 신고할 때 적용한 정상가격산출방법에 관한 증명 자료를 보관·비치하고,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그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이하 “추가 면제사유”)를 신설하여 외국법인의 사후적인 과세상의 불확실성을 감소시켰다. 또한, 동(同)추가 면제사유에 해당하기 위해 납세의무자가 보관·비치하고 과

세관청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요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는 자료의 종류와 합리적인 판단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기준을 신설하여 외국법인의 과세상의 예측가능성을 향상시켰다.

이상과 같이 최근 2008년과 2009년의 세법 개정을 통해 국제조세 분야의 법인세 세무조정과 관련하여 실무상 해석 및 적용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여러 항목들에 대한 과세상의 개선이 있었지만, 아직도 너무 복잡하거나 납세자의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다수의 관련 규정들이 있다. 따라서, 이론적인 분석을 통해 이러한 실무상의 어려움과 세법상의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지만, 이와 같은 주제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는 매우 발견하기 어렵다. 본 연구는 실무상의 어려움과 이로 인한 연구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국제조세 분야의 법인세 과세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후에 이를 바탕으로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실무계의 수요에 부응하고 이후의 세제개편에 참고할 수 있는 유용성을 제공하고자 한다.

III. 외국은행 지점에 관련된 주요 과세제도

이번 장에서는 외국은행 지점이 세무조정을 하면서 고려해야 할 주요한 과세제도들에 대하여 정리하기로 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일반적인 국내기업에는 해당하지 않는 동(同)과세제도들과 이로 인한 세무조정의 복잡성은 외국은행 지점의 중복적 특성(외국계 기업의 특성, 금융업의 특성, 지점의 특성, 외국은행 지점의 특성)으로 인한 것인데, 이러한 특수한 과세제도들에 대한 정리는 본 연구가 제시하려는 과세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다.

1. 과소자본세제(Thin Capitalization)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과소자본세제는 다국적 기업이 외국에 자회사나 지점을 설립할 때 자본금을 줄이는 대신 차입금을 늘려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을 통해 과세이익을 감소시켜 조세를 회피하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외국법인의 고정사업장을 포함한 모든 내국법인에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고정사업장인 외국은행 지점의 차입금 중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과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담보의 제공 등 실질적으로 지급을 보증하는 경우를 포함)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그 국외지배주주가 주식 등으로 출자한 지분의 6배를¹⁰⁾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지급이자 및 할인료는 배당 또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되어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한다¹¹⁾.

10) 일반법인의 경우에는 3배

$$\text{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 \text{국외지배주주 등으로부터의 차입금(지급보증 금액 포함)에 대한 지급이자와 할인료} \times \frac{\text{①-국외지배주주 등의 내국법인 출자금액 적수의 6배}}{\text{내국법인의 국외지배주주 등에 대한 총차입금 적수(①)}} \quad (2)$$

식(2)를 구성하는 개별 항목들에 대하여 상설하면 아래와 같다.

가. 지급이자 및 할인료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국외지배주주 등에게 지급해야 할 이자 및 할인료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및 할인료에 사채할인발행차금 상각액, 융통어음 할인료 등을 포함(건설자금이자 제외)하고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담보의 제공 등 실질적으로 지급을 보증하는 경우를 포함)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및 할인료도 포함한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2항).

나. 차입금

원칙적으로 이자나 할인료를 발생시키는 모든 부채가 차입금에 해당되지만,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경우에는 은행간 거래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표 4>의 차입금은 과소자본세제 규제대상 차입금에서 제외한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제1항).

<표 4> 과소자본세제 규제대상 차입금에서 제외하는 차입금

- ① ㉠ 외국환거래법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 또는 외국환은행에 대하여 외화로 예치 또는 대출하는 방법 ㉡ 외국환거래법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행한 외화표시증권을 인수 또는 매매하는 방법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당해 외국은행의 본점·지점으로부터 외화로 예수 및 차입하는 금액
- ②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정부(한국은행 포함)의 요청에 의하여 도입하는 외화차입금

또한, 자금의 원천이 외국은행의 본점·지점으로부터 외화로 예수 또는 차입한 금액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에 계상된 자금의 원천비율로(일별 또는 월별로 계산한 연평균잔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구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동(同)비율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본점·지점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으로 간주할 수 있는데(동법시행령 제24조 제2항) 동(同)규정을 통해 복잡한 자금거래의 원천 추적의 문제는 해결되었지만 실무상 계산의 복잡성 문제는 매우 크다.

1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다. 출자금액

국외지배주주의 출자금액 등은 각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국내 고정사업장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계산한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3항)¹²⁾.

라. 소득처분

국외지배주주로부터의 차입분은 배당으로 소득처분하고,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의한 제3자로부터의 차입분은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 국외지배주주로부터의 차입금과 국외지배주주 이외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동등한 과세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차입금의 비율에 따라 손금불산입액을 안분계산하여 배당 및 기타사외유출로 각각 소득처분한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6항). 또한, 과소자본세제에 의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은 법인세법상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제도(법인세법 제28조) 및 이전가격세제(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우선하여 적용된다(동법 제16조).

2. 간주자본제도(Deemed Capitalization)

법인세법시행령 제129조의3에 규정된 간주자본제도는 외국은행 국내지점에만 적용되는 특수한 규정으로 이자비용 공제를 위한 자기자본 비율 축소를 방지하기 위한 과소자본세제 규정과는 보완적으로 적용된다. 즉, 간주자본제도는 본점보다 자기자본 비율이 낮은 지점의 이자비용 공제를 규제하기 위한 것으로 식(3)과 같이 기술할 수 있다.

$$\text{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 \text{지급이자} \times \frac{\text{자본금추산액} - \text{자본금}}{\text{국내지점이 외국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으로부터 공급받은 총자금}} \quad (3)$$

식(3)을 구성하는 개별 항목들에 대하여 상설하면 다음과 같다.

- 12) 외국은행의 지점과 같은 국내 고정사업장과 달리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계산이 다소 복잡하다. 즉, 내국법인의 출자금액 = {자기자본(max(①, ②))} × (국외지배주주가 납입한 자본금(③) ÷ 납입자본총액(④)) 인데, 국내 고정사업장은 (③ ÷ ④) = 1 이기 때문에(외부주주가 없기 때문에) 계산이 비교적 간단한 것이다.

- ① 순자산 기준금액 :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 포함, 미지급법인세 제외)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
- ② 납입자본금 기준금액 :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납입자본금(자본금에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및 감자차익을 가산하고 주식할인 발행차금 및 감자차손을 차감한 금액)

가. 간주자본 지급이자와 자본금 추산액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자본금 계정상의 금액이 국내지점의 총자산액에 외국법인의 본·지점 전체의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국내지점의 총자산액 $\times$ 본·지점 전체의 (자기 자본금 $\div$ 총자산액)} (전술한 바와 같이 ㉠) 이나 국내지점의 기능, 소유자산, 부담한 위험 등을 반영하여 기획재정부령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하 “㉡”)(자본금추산액; 즉, 자본금추산액 = $\max(㉠, ㉡)$)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외국법인의 본점 또는 해외지점으로부터 공급받은 총자금 중 그 미달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이하 “간주자본 지급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동법시행령 제129조의3 제1항). 이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은 국제결제은행(BIS; Bank of International Settlement)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내지점의 위험가중자산에 외국법인 본·지점의 자기자본이 위험가중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방법으로 BIS 자기자본비율을 의미한다. 이 경우 외국법인의 본·지점이 국제결제은행이 정하는 다른 기준으로 BIS 자기자본비율을 계산하는 경우(예컨대, 본점과 지점이 각각 Basel I 과 Basel II 협약에 따른 BIS 비율을 계산하는 경우)에는¹³⁾ 본점의 적용방법으로 조정할 수 있다(동법시행규칙 제63조의2 제1항). 또한, 자본금추산액을 산정할 때 본·지점 간의 회계처리 방법에 차이가 있으면 본점의 회계처리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국내지점은 본점의 회계처리 방법으로 조정된 자료를 보관·비치해야 한다(동법시행령 제129조의3 제2항).

나. 간주자본제도와 과소자본세제의 적용순위

손금불산입 대상인 간주자본 지급이자와 과소자본 지급이자에 동시에 발생한 경우의 적용순위는 아래와 같다(동법시행령 제129조의3 제3항).

- ① 간주자본 지급이자에 과소자본 지급이자보다 적은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간주자본 지급이자는 없는 것으로 본다.

13) BIS의 Basel위원회는 1980년대에 선진국 은행들이 중남미 국가들에 대한 부실채권이 늘어나면서 국제 금융의 안정성 문제가 제기되자 1988년에 은행의 자기자본비율(아래의 것과 구분하기 위해 “Basel I 협약에 따른 BIS 비율”) 기준을 설정했다. 그러나, 금융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기존의 BIS 비율로는 금융기관 재무상태의 적정성을 평가하는데 한계가 나타남에 따라 BIS Basel 은행감독위원회가 1999년부터 새로운 협약의 마련을 추진하여 2006년말부터 새로운 은행의 자기자본비율(“Basel II 협약에 따른 BIS 비율”) 기준을 시행하고 있고, 국내은행들은 동(同)자기자본비율을 2007년말부터 시행하고 있다. Basel I 과 Basel II 협약에 따른 BIS 비율의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다.

BIS I 협약에 따른 BIS 비율 = $\{(Tier1 + Tier2) \div RWA\}$

BIS II 협약에 따른 BIS 비율 = $\{(Tier1 + Tier2 + Tier3) \div (RWA + 12.5 \times Cmr + 12.5 \times Cor)\}$

단, Tier1 : core capital(including equity capital and disclosed reserves); Tier2 : secondary bank capital (including items such as undisclosed reserves, general loss reserves, subordinated debt of five years); Tier3 : subordinated term debt of a maximum of two years; RWA : risk weighted assets; Cmr : capital requirements for market risk; Cor : capital requirements for operational risk.

- ② 간주자본 지급이자가 과소자본 지급이자보다 많은 경우에는 간주자본 지급이자에서 과소자본 지급이자를 뺀 금액만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즉, 각각 계산한 손금불산입 대상인 간주자본 지급이자를 D , 손금불산입 대상인 과소자본 지급이자를 T 라고 할 경우에 최종적으로 계상하는 손금불산입 금액은 <표 5>과 같다.

<표 5> 간주자본 지급이자와 과소자본 지급이자의 적용순위

경 우	손금불산입 계상액		
	간주자본 지급이자(①)	과소자본 지급이자(②)	계(①+②)
$D < T$	0	T	$T(=\max(T, D))$
$D \geq T$	$(D - T)$	T	$D(=\max(T, D))$

<표 5>와 같이 간주자본 지급이자와 과소자본 지급이자 중 중복하여 손금불산입되지는 않지만(구분한 두 경우 모두 손금불산입 계상액의 합계는 $\max(T, D)$ 이지만), 과소자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이 간주자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에 비해 우선 적용되는 것을(구분한 두 경우 모두 과소자본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T)은 전액 반영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다. 소득처분

과소자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액 중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한 것은 배당으로 소득처분하고 제3자에게 지급한 것은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지만, 간주자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액의 소득처분은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국외지배주주에 본점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유권해석(서면2팀-1659, 2004.8.12.)을 고려하면 배당으로 소득처분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3. 본점경비의 배부제도(Head Office Expense Allocation)

외국은행의 지점과 같은 국내 고정사업장은 다른 본·지점 등의 지원을 받아 사업을 수행하며 다른 본·지점의 업무를 지원하기도 한다. 따라서, 국내사업장과 관련한 비용이 국외의 본점이나 다른 지점에서 발생했다고 할지라도 국내원천소득과 합리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과세소득을 계산할 때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외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에서 발생한 비용이라고 하더라도 국내원천소득의 발생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 고정사업장의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고 본·지점 간에 내부거래로 발생하는 수익이나 비용도 익금과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본점경비의 배부에 관한 사항들은 국세청고시 제2001-10호(외국기업 본점 등의 공통경비 배분방법 및 제출서류에 관한 고시, 2001.2.27.)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상설

하면 아래와 같다.

가. 배분대상경비의 범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64조 제4항의¹⁴⁾ 규정에 따라 외국기업 국내사업장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당해 국내사업장에 배분할 본점 및 그 국내사업장을 관할하는 관련지점(이하 “지역통할점”)의 배분대상경비의 범위는 <표 6>와 같고, 배분대상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경비의 범위는 <표 7>과 같다(동(同)고시 제1조 및 제2조).

<표 6> 국내 고정사업장에 배분할 본점 및 지역통할점의 배분대상경비의 범위

- ① 외국기업 국내사업장의 본점 및 지역통할점 등에서 발생한 경영비 및 일반관리비에 해당되는 경비 중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의 발생과 합리적으로 관련 있는 경비
- ② 국내사업장에서 발생한 경비 중 공통경비에 해당하는 경비

<표 7> 국내 고정사업장에 배분할 본점 및 지역통할점의 배분대상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경비의 범위

- ①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4조 제1항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6조의 4 제1항의 규정에 열거된 경비
가. 본점 및 지역통할점에서 수행하는 업무 중 회계감사, 각종 재무제표의 작성 또는 주식발행 등 본점 및 지역통할점만의 고유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발생하는 경비
나. 본점 및 지역통할점의 특정 부서나 특정 지점만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비
다. 본점 및 지역통할점에서 다른 범인에 대한 투자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경비
라. 기타 국내원천소득의 발생과 합리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는 경비
- ② 공통경비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그 경비가 발생된 본점이나 지역통할점 소재지국의 조세법령 등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에 손금으로 산입되지 않는 경비
- ③ 각종 충당금이나 준비금의 전입액 중 실제로 발생하지 아니하여 국내사업장의 적정한 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손금으로 인정될 수 없는 경비

나. 경비배분액의 계산방법

<표 6>의 배분대상 공통경비의 배분방법은 항목별 배분방법과 일괄배분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산하여야 하며, 국내사업장이 선택하여 적용한 배분방법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사업연도 이후에도 계속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동(同)고시 제3호).

(1) 항목별 배분방법

배분대상 공통경비를 경비항목별로 구분한 후 당해 경비를 가장 합리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14) 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6조의4 제4항

배분기준을 설정하여 그 배분기준에 따라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공통경비를 계산하는 것인데, 항목별 경비배분기준으로는 수입금액, 매출총이익, 자산가액, 인건비, 기타 당해 경비항목의 성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기준을 적용한다.

(2) 일괄배분방법

항목별 배분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거나 배분대상 공통경비액이 적어 항목별 배분의 실익이 없는 때에 적용하는 방법으로 배분대상 공통경비총액에 국내사업장의 수입금액이 본점 및 국내사업장을 관할하는 지역통합점의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공통경비 배분액을 계산한다¹⁵⁾.

4. 국제조세서식 제출 제도(Obligation of Documents Submission)

외국은행 지점을 포함한 외국계 기업들은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내국법인이 제출하는 법인세법상의 각종 신고서식 외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고서식을 동시에 제출해야 한다. 후술하는 바와 같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요구하는 각종 신고서식들은 기재사항들이 복잡하고 어려워 납세자들의 작성부담이 큰 편인데, 동(同)신고서식들은 관련 제도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할 수 있다.

가. 과소자본세제 관련 서식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2는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과세조정은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조정명세서’ 서식(갑), (을) 및 (병)과¹⁶⁾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의 적수계산명세서’에¹⁷⁾ 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15) 일괄배분방법에 의한 본점 및 지역통합점의 공통경비배분액 = {본점의 배분대상경비 × (국내사업장의 수입금액 ÷ 본점의 수입금액과 본점의 산하 각 지점 등의 수입금액의 합계액)} + {지역통합점의 배분대상경비 × (국내사업장의 수입금액 ÷ 지역통합점의 수입금액과 지역통합점의 산하 각 지점 등의 수입금액의 합계액)} 으로 계산한다.

즉, 본점을 H, 각각의 지역통합점을 A₁, B₁, ..., N₁, 각각의 지역통합점 산하의 각 지점 및 고정사업장을 A₂, ..., A_{KA}, B₂, ..., B_{KB}, ..., N₂, ..., N_{KN} 이고 그 중 국내 고정사업장을 I₁ 라고 할 경우에 D(I₁) = C(H) × $\frac{\sum REV(I_i)}{\sum REV(..)}$ + C(I₁) × $\frac{REV(I_1)}{\sum REV(I_i)}$ 으로 계산한다(단, D(I₁) : 국내 고정사업장의 공통경비배분액, C : 배분대상경비, REV : 수입금액).

16)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호의2 서식(갑), (을) 및 (병)

1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호의2 서식(정)

나. 본점경비의 배부제도 관련 서식

외국기업 본점 등의 공통경비 배분방법 및 제출서류에 관한 고시 제5항은 외국기업 국내사업장이 각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할 공통경비가 있는 경우에는 <표 8>의 서류를 법인세 신고시 또는 수정신고시에 해당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동항 제가호).

<표 8> 외국기업의 국내사업장이 배분대상 본점경비가 있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서류

- ① 외국기업 본점 등의 공통경비배분계산서(동(同)고시 별지 제1호 서식)
- ② 배분대상 공통경비명세 및 입증자료(손익계산서 등)
- ③ 본점 및 지역통합점의 수입금액명세 및 입증자료(통합손익계산서 등)
- ④ 본점 및 지역통합점의 조직도, 부서별 업무분장규정 등 본점의 공통경비 배분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또한, 동항은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외국기업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에 손금에 산입할 공통경비배분액과 관련하여 그 국내사업장에 필요한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경비배분기준의 합리성 및 경비배분계산이 적정함을 입증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국내사업장은 증빙서류를 제출하거나 경비배분기준의 합리성 및 경비배분계산이 적정함을 입증해야 한다고 규정하였고(동항 제나호), 국내사업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제가호 및 제나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경비배분기준의 합리성 및 경비배분계산이 적정함을 입증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거나 입증하지 않은 공통경비배분액은 당해 서류를 제출하거나 입증할 때까지 그 외국기업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동항 제다호).

다.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관련 서식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는 국외특수관계자와 국제거래를 행하는 납세의무자는 ‘국제거래명세서’와¹⁸⁾ ‘국외특수관계자의 요약손익계산서’를¹⁹⁾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제출해야 하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부득이한 사유로²⁰⁾ 인하여 동(同)서식을 신고기한 내에 제출할 수 없는 경우로서 납세의무자의 신청이 있는

18)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19)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2 서식

20) ‘부득이한 사유’는 ①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화재·재난 및 도난 등의 사유로 자료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②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여 자료제출이 심히 곤란한 경우 ③ 권한있는 기관에 관련 장부·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④ 국외특수관계자의 과세연도 종료일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 ⑤ 자료의 수집·작성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할 수 없

경우에는 1년의 범위 내에서 제출기한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동법시행령 제7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은 거주자가 가장 합리적인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선택하고 선택된 방법 및 이유를 기재한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를²¹⁾ 과세표준의 확정신고시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표 9〉 과세당국이 납세의무자에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관련자료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자산의 양도·매입 등에 관한 각종 관련계약서 ② 제품의 가격표 ③ 제조원가계산서 ④ 특수관계가 있는 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를 구별한 품목별 거래명세표 ⑤ 용역의 제공이나 기타 거래의 경우에는 ①~④에 준하는 서류 ⑥ 법인의 조직도 및 사무분장표 ⑦ 국제거래 가격결정자료 ⑧ 특수관계가 있는 자간의 가격결정에 관한 내부지침 ⑨ 당해 거래와 관련된 회계처리기준 및 방법 ⑩ 당해 거래와 관련된 자의 사업활동내용 ⑪ 특수관계가 있는 자와의 상호출자현황 ⑫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시 누락된 서식 또는 항목 ⑬ 용역거래와 관련하여 그 거래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서 아래의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역거래 계약서 ㉡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들간의 관계도 ㉢ 용역거래 당사자의 내부 조직도 및 조직별 설명자료 ㉣ 용역의 제공을 위하여 발생한 비용의 지출항목별 내역²²⁾ ⑭ 용역거래의 정상원가분담액 등에 의한 과세조정과 관련한 아래의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 참가자의 명단, 계약 참가자가 제공하는 자산의 유형 및 내역, 계약참가자간의 권리관계의 사항이 포함된 원가분담약정서 ㉥ 계약 참가자의 명단, 계약 참가자가 제공하는 자산의 유형 및 내역, 계약참가자간의 권리관계의 사항이 포함된 원가분담수정약정서²³⁾ ㉦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와 관련하여 적용하는 회계원칙 및 평가내역 ㉧ 참여자 및 수혜자가 얻을 기대편익의 평가내역 ㉨ 실제로 실현된 기대편익(실제편익)의 측정내역 ㉩ 기대편익과 실제편익의 차이에 따른 정산내역 ⑮ 기타 적정가격 산출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
|--|

는 경우 ⑥ ①~⑤에 준하는 사유가 있어 기한 내에 자료제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의미한다(동법시행령 제21조).

2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무형자산의 국제거래의 경우), 제1호의2(용역의 국제거래의 경우) 및 제1호의3(그 밖의 국제거래의 경우) 서식

마지막으로, 동법 제11조 제2항은 과세당국은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에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거래가격 산정방법 등의 관련자료를 제출하도록 납세의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했는데²⁴⁾, 동법시행령 제19조 제1항과 동법시행규칙 제6조의2는 동(同)관련자료의 범위를 납세의무자 또는 그의 국외특수관계자의 <표 9>에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로 매우 포괄적으로 규정하였다. 또한, 동법 제12조는 <표 9>를 요구받은 자가 법령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IV. 외국은행 지점의 과세제도의 개선방안

전술한 바와 같이 최근 2008년과 2009년의 세법 개정을 통해 다양한 외국은행 지점의 과세상 문제점들이 개선되었지만, 아직도 학계나 실무계에서는 많은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다. 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등은 정상가격이나 비용배분 등의 입증책임을 기본적으로 납세자에게 부담시키기 위해 다양한 자료를 제출할 납세자의 의무와 이를 요구할 수 있는 과세관청의 권리를 규정하여 아직도 과중한 납세협력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번 장에서는 제3장에서 상술한 외국은행 지점의 주요한 과세제도들의 문제점과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과소자본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과소자본세제와 관련하여 국내 고정사업장인 외국은행의 지점과 국외지배주주인 본점은 경제적으로 하나의 실체이기 때문에 본·지점 간의 이차지급액을 다시 배당소득으로 과세처분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국가에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과소자본세제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아래에서는 경제적 정당성 대신 외국제도와의 비교를 바탕으로 동(同)제도의 시행상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만 분석하기로 한다.

22) 거래순이익률방법에 따라 용역에 대한 대가를 산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3) 중도참여자 또는 중도탈퇴자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24)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납세의무자는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당해 자료를 제출해야 하되, 각주 20)과 같은 정당한 사유로 제출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과세당국은 1차에 한하여 6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동법 제11조 제3항). 또한,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납세의무자가 각주 20)과 같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불복신청 또는 상호합의 절차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과세당국 및 관련기관은 당해 자료를 과세자료로 이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동법 제11조 제4항).

가. 외국의 과소자본세제 분석²⁵⁾

우리나라의 과소자본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전에 외국의 과소자본세제를 먼저 분석하기로 한다.

우리나라와 같이 외국은행 지점의 본점자금 유입을 증가시키고 외화조달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과소자본세제의 특례를 적용하는 국가가 있는 반면 동(同)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국가들도 다수 존재한다. 11개 국가의 과소자본세제를 비교·분석한 Earnst & Young(2008)에²⁶⁾ 의하면 외국은행 지점에 대하여 과소자본세제의 특례를 제공하는 국가는 호주와 뉴질랜드 뿐이다.²⁷⁾

이하에서는 금융업에 대한 과소자본세제의 특례를 적용하는 호주와 뉴질랜드의 제도를 분석한 후 우리나라의 제도와 비교하였다.

(1) 호주

호주는 2001년에 과소자본세제를 개편한 이후 은행과 그 밖의 일반기업을 구분하여 동(同)세제를 적용하고 있다. 부채 대 자본비율을 이용하여 과다차입을 규제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호주의 과소자본세제는 부채 대 자산 비율을 이용하여 과다차입을 규제하고 추가적으로 최저이자면제(de minimis threshold) 규정을 운영하고 있다.

은행업에 대한 호주의 과소자본세제 특례규정의 특징은 ① 비금융기관은 기준 이상의 부채를 설정하지 못하도록 강하게 규제하는(maximum allowance debt) 반면 은행업은 최소자본규정(minimum capital amount)을 적용하여 이를 완화하고 ② 위험이 큰 자산을 보유한 경우에는 더욱 많은 자본을 보유하도록 하는 반면 위험이 낮은 자산을 보유한 경우에는 자본의 필요 보유금액을 낮추도록 하는 자본적정 규정(capital adequacy requirements rule)을 근간으로 함으로써 경제적 실질(substance over form)을 추구하며 ③ 소매금융(deposit)을 운영하는 모든 내·외국계 은행에 동(同)특례규정이 동시에 적용된다는 것이다.

(2) 뉴질랜드

뉴질랜드의 과소자본세제는 1995년부터 시행되고 있고 외국은행(foreign-owned registered bank)에 대한 새로운 특례규정은 2005.7.1.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동(同)특례규정은 외국은행의 조세부담을 증가시키기 위한 것으로 금융업에 대한 우호적 특례를 제공하는 우리나라의 과소자본세제와는 큰 차이가 있다.²⁸⁾

25) 본 절의 내용은 Earnst & Young의 “Thin Capitalization Regimes in Selected Countries”(2008)의 보고서 중에서 금융업이나 은행업과 관련한 특수규정을 요약한 것이다.

26) 동(同)보고서는 캐나다의 국제조세시스템을 논의하기 위해 작성한 것이고 11개 국가는 호주,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네덜란드, 뉴질랜드, 스웨덴, 영국, 미국 및 캐나다이다.

27) 그 밖의 구체적인 운영방식은 국가별 정책목표에 따라 매우 상이한 것을 발견할 수 있다.

28) 뉴질랜드의 새로운 과소자본세제에 대한 해설(www.highbeam.com/doc/1G1-131686740.html)에서 인

외국계 은행에 대한 뉴질랜드의 과소자본세제 특례규정은 일반업종에 대한 규정과는 다르게 내국은행의 자본금 수준과 위험가중노출자산(risk-weighted exposures)의 4%를 비교하여 적정 자본을 계산하고 자본 금액이 동(同)적정자본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을 공제하지 않고 있다.

(3) 우리나라의 과소자본세제와의 비교

외국의 제도와 비교한 우리나라의 과소자본세제의 특징은 ① 동(同)세제를 외국법인에게만 적용하며 금융업에는 특례를 제공하고 ② 부채 대 자본비율을 이용하여 과다차입 여부를 결정하며 ③ 국제조세와 관련한 다른 세법규정과의 연계가 없으며 ④ 최저이자면제(de minimis threshold) 규정을²⁹⁾ 시행하지 않는 것이다. 전술한 호주나 뉴질랜드는 소매금융은행업이나 외국계 은행만을 대상으로 과소자본세제의 특례규정을 시행하지만 우리나라는 모든 금융업을 대상으로 동(同)특례규정을 시행하기 때문에 적용범위는 가장 넓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10〉 과소자본세제의 금융업 관련 특례 규정 비교

	적용 대상	특례 사항
한국	금융업	자본금의 6배(일반기업은 3배)로 한도 완화
호주	소매금융은행업 (내·외국계)	최대부채규정을 적용하는 일반기업에 비해 은행업은 최소자본규정을 적용하여 완화위험의 크기에 따라 자본의 필요 보유금액을 조정
뉴질랜드	외국은행	내국은행의 자본금 수준과 위험가중노출자산의 4%를 비교하여 적정 자본을 계산

이하에서는 이상의 외국제도와와의 비교·분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과소자본세제의 실무적인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분석하기로 한다.

나. 을기금의 자본 인정 문제

은행법시행령 제26조는 외국은행 지점에 대해서는 <표 11>에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한 영업기금을 자본금으로 본다고 규정하였다.

용)에 의하면 동(同)세법개정을 통해 외국계 은행에게 연간 약 360만 뉴질랜드 달러를 추가적으로 과세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9) Earnst&Young(2008)이 분석한 11개 국가 중에서 7개 국가가 동(同)규정을 시행하고 있다.

<표 11> 금융위원회가 자본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 해외은행 지점의 영업기금

- ① 외국은행 지점의 설치 및 영업행위를 위하여 그의 본점이 한국은행에 외화자금을 매각하여 당해 지점에 공급한 원화자금
- ② 은행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외국은행 지점의 적립금에서 전입하는 자금
- ③ 외국은행 지점을 추가로 설치하기 위하여 이미 국내에 설치된 외국은행 지점의 이월이익잉여금에서 전입하는 자금
- ④ 외국은행 지점이 한국은행에 외화자금을 매각하여 조달한 원화자금
- ⑤ 외국은행의 본점 또는 국외지점으로부터 상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조건으로 차입한 자금중 국내에서 운용하는 자금

<표 11>의 영업기금 중에서 ④와 ⑤는 외국은행에 독특하게 규정되는 올기금으로³⁰⁾ 은행법에서는 자본으로 분류되지만, 회계상으로는 부채로 분류되어 과소자본세제 적용시 자본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은행법에서 특정한 정책목적³¹⁾ 위해 올기금을 차입금이 아닌 자본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이러한 구분을 다른 법령에서 부인하는 것은 법령간 불일치와 당사자들에게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의 과소자본세제에서도 외국은행 지점의 올기금을 차입금이 아닌 자본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다. 차입금 개념의 불명확성 문제

전술한 바와 같이 과소자본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차입금에는 원칙적으로 이자나 할인료를 발생시키는 모든 부채가 해당하지만, <표 4>의 차입금(이하 “제외차입금”)은 과소자본세제 규제대상 차입금에서 제외한다. 그러나, 제외차입금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해석과 관련한 장래의 분쟁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제외차입금에서 규정한 자금의 원천과 목적에 따라 대출하되 차입시기와 대출시기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 이러한 차입금을 전액 제외차입금에 포함시키는지 또는 적수(積數)의 개념에 따라 일부만 제외차입금에 포함시키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 제외차입금에서 규정한 목적에 따라 대출하는 대부분의 차입금이 차입시기와 대출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법령 해석의 차이로 인한

30) 올기금은 동일인 내지 동일계열 기업군 여신한도와 같은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영업규제와 관련하여 여신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자기자본에 포함시킨 명목상의 자본금이다. 즉, 은행법 및 동법시행령 등의 위임규정인 은행감독규정 제11조는 외국은행 지점의 영업기금을 갭기금과 올기금으로 구분한 후 갭기금은 지점마다 30억원 이상으로 하고, 올기금은 지점이 외화자금을 환매조건부로 한국은행에 매각하여 보유·운용하는 원화자금의 범위내로 하되, 갭기금과 대차대조표상의 자본잉여금 및 이익잉여금 중 제준비금 합계액의 6배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다.

31) 은행법은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 자금중개기능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예금자를 보호하고 신용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은행법 제1조).

과세상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법령에 적수 개념의 적용 여부나 제외차입금에 포함시키는 차입시기와 대출시기의 차이의 한도를 신설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전술한 바와 같이 제외차입금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에 계상된 자금의 원천비율로(일별 또는 월별로 계산한 연평균잔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구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동(同)비율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본점·지점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으로 간주할 수 있다. 그러나, 제외차입금에 해당하기 위한 “외화차입금”의 요건에 외화콜머니나³²⁾ 전술된 을기금이 포함되는지 여부와 안분계산의 방법(예컨대, 안분계산에 이용하는 연평균잔액이 제외차입금을 포함한 것인지의 여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역시 해석과 관련한 장래의 분쟁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제외차입금의 범위 및 안분계산의 방법과 관련한 법령 해석의 차이로 인한 과세상의 불확실성도 제거하기 위해 법령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라. 제3자거래와의 유사성 입증책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은 차입금의 규모 및 차입조건이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통상적인 차입규모 및 조건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및 할인료에 대하여는 과소자본세제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비교가능한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통상적인 차입”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고, 차입규모 및 조건의 동일성 내지 유사성의 입증책임을 전적으로 납세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동(同)규정을 실제로 적용하기는 매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³³⁾. 따라서, 비교가능한 차입규모 및 조건의 범위를 법령에 포함시켜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향상시키고 입증책임의 부담을 완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마. 적용환율의 문제³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제4항은 과소자본세제를 적용할 때 내국법인이 국

32) 금융기관 간에 30일 이내의 초단기로 외화를 대차하는 거래를 외화콜이라고 하는데, 외화콜을 대여하는 것을 외화콜론이라 하고 차입하는 것을 외화콜머니라고 한다. 금융기관들은 수출입대금 결제, 외화대출 등의 대고객거래나 외화매매 등의 결과에 따라 일시적으로 외화자금에 부족하거나 여유자금이 발생할 경우 외화콜거래에 참가한다.

33) 최근의 금융위기 기간에는 이자율의 변동이 매우 심하기 때문에 납세자가 차입 간의 동일성 내지 유사성을 입증하는 것이 더욱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34) 본 연구에 대한 심사가 진행중이던 2009.8.7.에 기획재정부는 보도자료(‘과소자본세제 관련 외화차입금 환산시 적용환율 개선’)를 통해 본절에서 제시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①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환율을 적용한 외화차입금 환산방법과 ② 일일환율을 적용한 외화차입금 적수계산 방법 중 납세자에게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고, 2009.12.31.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서 제24조 제5항을 신설하여 동(同)개선방안을 법령에도 반영하였다. 그러나, 비록 법령이 개정되었더라도 법령 개정 이전의 중요한 문제점을 분석한 본 절의 내용은 외국은행 지점의 과세제도를 종합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하거나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으로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은 사업 연도 종료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다수의 외국은행 지점들은 원화 대신 본점 소재지국의 통화를 기준으로 한 그룹별 통합 회계시스템을 사용하기 때문에, 국내 지점들은 본점 회계시스템의 지원 범위 내에서만 적수를 계산하기 위한 일별 또는 월별 차입금 잔액을 계산할 수 있는 실무상의 어려움이 있다.

이와 함께 외국은행 본점은 국내 지점의 과세상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대부분 원화로 환산된 금액으로 차입금 배율 기준을 연중 관리하는데 회계연도말에 갑자기 환율이 상승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노력과 관계없이 거액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이 발생할 수 있는 실무상 어려움도 있다.

외국은행 본점이 본점 소재지국 통화 대신 원화로 차입금 배율 기준을 관리하는 것은 납입자본이 이미 원화 기준으로 운용되기 때문에 차입금 또한 원화로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외국은행의 업무관행을 존중하고 이상의 실무상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과소자본세제에 적용하는 일별 또는 월별 차입금 잔액을 외화환산이 이미 반영된 원화 기준 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바. 차입금 배율 규정의 비일관성 문제

외국은행의 지점은 과소자본세제로 지급이자가 손금불산입될 경우에는 국외지배주주인 본점에 대한 배당으로 소득처분된 손금불산입액의 원천징수의무까지 부담하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동(同)규정의 차입금 배율 기준을 충족하려고 한다. 또한, 다국적기업인 외국은행의 본점도 전세제적인 자본운용 계획에 따른 경영을 하기 위해 투자국들의 안정적인 조세제도를 선호한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최근의 잦은 차입금 배율 기준의 개정(6배→3배(2007.12.31.자 개정)→6배(2008.10.7.자 개정))은 다국적기업의 안정적 운영에 혼란을 일으킨 문제점이 있다.³⁵⁾

따라서, 이후에는 외국계 금융회사의 차입금 배율 기준의 일관성을 가급적 유지하되, 동(同)기준을 변경할 때에는 급격한 변경을 지양하고 법령 부칙에 적용시기까지의 기간을 충분히 제공해서 변경된 기준에 대비하게 해야 할 것이다.

2. 간주자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전술한 바와 같이 2009년의 세법 개정에서는 간주자본제도와 관련한 다양한 과세상의 개선이

35) 이러한 문제점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을 계산하기 위한 총차입금과 출자금액이 기말잔액이 아닌 적수(積數)의 개념이기 때문에 과세연도 중에 세법을 개정 또는 개정예고하더라도 개정일 또는 개정예고일 전까지의 누적효과가 해당 과세연도말까지 계속 지속되는 문제점은 여전히 남기 때문이다.

있었다. 아래에서는 동(同)세법 개정 이후에도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한 결산일과 신고기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분석하기로 한다.

가. 결산일의 차이의 문제점

간주자본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을 계산하는 식(2)에서 자본금추산액을 산정할 때 본·지점 간의 회계처리 방법에 차이가 있으면 본점의 회계처리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데(법인세법시행령 제129조의3 제2항) 외국은행 본점과 국내지점의 결산일이 다를 경우의 적용방법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서 과세상의 불확실성이 아직 남아있다. 실무상으로는 본점의 분기재무제표나 가결산재무제표를 이용하여 자본금추산액을 계산하는 편의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있지만 법령의 미비로 인한 해석의 공백은 납세자의 혼란을 일으키고 사후적인 과세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외국은행의 본점과 국내지점의 결산일이 다를 경우에 사업연도를 대응시키기 위해 법령을 보완하는 것(예컨대, 매년 1월 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같은 사업연도로 의제하거나 분기재무제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나. 비현실적인 신고기한의 문제점

위와 반대로 외국은행의 본점과 지점의 결산일이 같은 경우에도 본점의 회계정보를 국내지점의 세무조정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 즉, 본점과 국내지점의 회계기간이 모두 12월말에 종료하더라도 재무제표의 작성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법인세 신고기한까지도 본점의 정확한 계정별 금액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외국법인 본점은 결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대부분 법인세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반면 국내지점은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본점 등의 결산이 확정되지 않은 등의 사유로 인하여 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연도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기한연장승인신청을 할 수 있지만(법인세법시행령 제136조 제1항) 신고기한 연장승인을 얻은 후 신고세액을 납부하는 때에는 기한연장일수에 1일 0.03%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납부해야 한다(동조 제4항). 외국은행의 지점으로서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에 법인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신고기한을 연장해주는 대신 납부세액을 가산하는 것은 외국법인의 업무관행을 고려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외국은행의 지점도 국내법인과 같이 원칙적으로는 사업연도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하도록 하고 이후 본점의 결산이 확정된 후 증감하는 세액을 수정신고나 경정청구하도록 하되, 증가하는 세액이 당초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가산세를 면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3. 본점경비의 배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³⁶⁾

전술한 바와 같이 외국은행의 지점과 같은 국내 고정사업장은 다른 본·지점 등의 지원을 받아 사업을 수행하며 다른 본·지점의 업무를 지원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업무지원 대가는 개별적으로 지급하거나 청구하는 대신 본점이 일괄적으로 계산해서 경비를 배분한다. 배분된 경비는 현금으로 직접 송금받거나(hard cash) 내부관리 목적으로 국내 지점의 비용으로 계상하는데(soft cash) 동(同)경비가 국내 지점의 수익과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두 가지 모두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경비배분방법은 전술한 바와 같이 항목별 배분방법과 일괄배분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본점경비의 배부제도와 관련한 문제점은 손금산입 여부보다는 업무관련성의 입증책임과 과세자료 제출과 관련한 과중한 납세협력비용이라고 할 수 있다.

가. 합리적 관련성의 불명확성 문제

전술한 바와 같이 국세청 고시 제2001-10호는 <표 6> 및 <표 7>과 같이 “국내 고정사업장에 배분할 본점 및 지역통합점의 배분대상경비의 범위”를 원칙적으로 규정하였다. 즉, ‘국내사업장에서 발생한 경비 중 공통경비에 해당하는 경비’와 함께 ‘외국기업 국내사업장의 본점 및 지역통합점 등에서 발생한 경비 및 일반관리비에 해당되는 경비 중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의 발생과 “합리적으로 관련 있는” 경비’만이 동(同)배분대상경비에 해당한다. 그러나, “합리적 관련성”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납세자에게 혼란을 일으키는 문제점이 있다. 즉, 외국은행마다 본점이 수행하는 업무의 정도, 공통경비를 지점에 배분하는 정책과 기준이 다르고 외국은행의 본점은 대부분 내부정책으로 동(同)정책과 기준을 지점에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본점이

- 36) 본점경비의 배부제도와 관련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은 외국은행 지점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외국계 기업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표 12>에서 소개한 외국은행 지점에 대한 최근의 실제 과세사례와 같이 본점경비의 적정배부와 관련한 적출사항이 추정세액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외국은행 지점에 대하여 동(同)항목의 실무상 중요성이 더욱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12> 본점경비의 배부제도가 외국은행 지점에 대한 실제 과세사례에서 차지하는 중요성

외국은행 지점	과세표준 적출액(①)	① 중에서 본점경비 배부제도의 관련금액(②)	비율(②÷①)
A은행 서울지점	99억원	76억원	76%
B은행 서울지점	128억원	40억원	31%

<표 12>의 두 가지 과세사례는 서울지점의 업무와 관련 없는 본점경비를 배부받았다는 것이 과세사유이지만 본 절에서 분석한 “합리적 관련성”의 적용과 관련하여 명확한 규정이나 사례가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실제 KPMG가 2005년에 발간한 설문조사 보고서(Branch Capital Attribution for Banks - A Survey for International Practice)에는 한국의 본점경비 배부제도에 대하여 “Taxpayers are already carrying a heavy compliance burden to prove arm's length international transactions.”라고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조사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G등급을 부여하였다.

적극적으로 협력하지 않아서 <표 8>의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국은행의 지점은 공통경비의 합리적 관련성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또한 동(同)서류를 제출하더라도 이를 합리적 관련성의 근거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관련하여 과세관청과 잦은 분쟁이 발생하여 과세상의 불확실성이 매우 크다.

외국은행의 지점이 합리적 관련성을 주장하기 위해 제출하는 자료에 대한 검토는 필요하지만 이상의 문제점 때문에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첫째, 외국은행의 지점이 국내에서 영업을 시작할 때 공통경비의 배분과 관련하여 본점과 지점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과세관청의 요청자료에 관한 안내문을 본점 소재지국의 언어로 작성하여 교부하되, 동(同)안내문은 납세자에게 과중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요구 수준이 적정하고 풍부한 예시자료로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작성해야 할 것이다. 둘째, <표 6>와 <표 7>의 범위를 더욱 구체적으로 규정해서 배분대상경비의 해당 여부와 관련한 과세관청의 재량권을 축소해야 할 것이다.

나. 적용환율의 문제

동(同)고시 제3조는 공통경비 배분시 외화의 원화환산은 외국환거래규정에 의한 매매기준율 또는 제정된 매매기준율의 연평균율을³⁷⁾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외화비용은 원칙적으로 발생일의 환율로 환산되기 때문에 동(同)연평균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외환차손익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러한 외환차손익의 세무상 처리방법은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외국은행이 공통경비의 발생일을 입증할 수 있으면 발생일이나 지급일의 환율을 적용할 수 있게 허용하여 납세자의 추가적인 부담과 환율위험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 법인세법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도 단일 적용환율을 규정한 조항이 많은데, 환율은 외국기업의 수익과 비용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세무행정상의 어려움이 크지 않으면 다양한 적용환율을 허용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시킬 수 있을 것이다.

다. 국내 공통경비의 배분과 관련한 법령 미비의 문제점

우리나라의 금융시장 규모가 커짐에 따라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본점이나 다른 해외지점을 지원하기 위해 발생하는 경비의 규모 또한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즉, 본점이나 지역통할점의 공통경비를 국내지점에 배분하는 것과 관련한 이상의 논의와는 반대로 장래에는 국내에서 발생한 공통경비를 배분하는 문제도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동(同)공통경비는 국내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현재의 본점 공통경비에 비해서는 쉽게 파악할 수 있지만 배분과 관련한 명확한 규정은 아직 미비하기 때문에 장래에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과세권을 원활하게 확보하기 위해 배분기준과 구체적인 계산방법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37) 당해 사업연도의 월평균 매매기준율의 합계액 ÷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

4. 국제조세서식 제출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전술한 바와 같이 국외특수관계자와 국제거래를 하는 납세의무자는 기본적으로 ‘국제거래명세서’, ‘국외특수관계자의 요약손익계산서’ 및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와 함께 추가적으로 과세당국의 요구에 따라 <표 9>와 같은 20여가지의 관련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과소자본세제의 과세조정과 관련하여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조정명세서’와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의 적수계산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들 중 일부 서식은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지만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재사항이 복잡한 다수의 서식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이미 작성해서 제출한 서식을 과세관청이 이후의 세무조사에서 다시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은행의 지점에게 과중한 납세협력비용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첫째, 법인세 신고시 제출해야 하는 서식을 간소화하거나 또는 오히려 동(同)서식을 더욱 세분하여 규정하는 대신 한번 제출한 서식은 과세관청이 이후의 세무조사에서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여 외국은행의 지점이 신고시와 세무조사시에 모두 과중한 납세협력의무를 부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 국세청이 세법해석의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2008.10.1.부터 시행하고 있는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Advance Ruling : 특정거래의 과세여부 등 세무관련 의문사항을 정확한 사실관계를 제시하고 사전에 질의하면 과세당국이 그 질의자에게만 적용할 수 있는 구속력 있는 답변을 주는 제도)를 확대하여 외국은행 지점이 <표 9>의 관련자료 중 요구할 것을 질의하면 과세당국이 사실관계를 검토한 후에 구속력 있는 답변을 제공하고 이후의 세무조사에서는 사실관계의 변동이 없는 한 추가적인 관련자료를 요구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납세협력비용의 경감을 위해서 시행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V. 결 론

소득이전을 통한 국제적 조세회피와 함께 국가 간의 과세권 경합으로 인한 이중과세의 가능성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고 국가 간의 원활한 조세협력을 도모하기 위해³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다. 최근 2008년과 2009년의 세법개정을 통해 국제조세 분야의 법인세 세무조정과 관련하여 실무상 해석 및 적용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여러 항목들에 대한 과세상의 개선이 있었지만, 아직도 너무 복잡하거나 납세자의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다수의 관련 규정들이 있다. 본 연구가 외국계 기업과 은행업의 중복적 특성 때문에 세무조정이 매우 복잡한 외국은행 지점의 과세제도를 정리한 후에 이를 바탕으로 제시한 과세상의 개선방안들은

38)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아래와 같다.

- ① 과소자본세제와 관련하여 다국적기업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손금불산업 과세처분의 기준인 차입금 배율 규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과세상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차입금의 개념을 명확하게 하고, 외국은행의 업무관행을 존중하고 실무상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차입금 잔액을 외화환산이 이미 반영된 원화 기준 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은행법의 취지를 존중하여 을기금을 차입금이 아닌 자본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과소자본세제의 적용을 배제하는 비교가능한 차입규모 및 조건의 범위를 법령에 포함시켜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향상시키고 입증책임의 부담을 완화시켜야 할 것이다.
- ② 간주자본제도와 관련하여 외국은행 본점과 국내지점의 결산일이 다를 경우 법령해석의 공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납세자의 혼란과 사후적인 과세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관련법령을 보완해야 할 것이고, 본점의 결산이 확정되어야 정확한 법인세 신고가 가능한 외국은행 지점의 업무관행을 존중하여 신고기한 내에 납부한 세액이 본점의 결산확정으로 증가하더라도 당초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가산세를 면제해야 할 것이다.
- ③ 본점경비의 배부제도와 관련하여 배분대상경비의 핵심적 개념인 합리적 관련성을 명확하게 하여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과세관청이 안내문을 작성·교부하고 관련고시의 예시규정을 더욱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재량권을 축소해야 할 것이다. 또한, 외국은행의 환율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공통경비에 연평균환율 대신 발생일이나 지급일의 환율을 적용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장래에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과세권을 원활하게 확보하기 위해 국내에서 발생한 공통경비의 배분기준과 구체적인 계산방법도 제시해야 할 것이다.
- ④ 국제조세서식 제출 제도와 관련하여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재사항이 복잡한 다수의 서식을 작성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이미 작성하여 제출한 서식을 과세관청이 이후의 세무조사에서 다시 요구하여 과중한 납세협력비용이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서식의 간소화 및 한번 제출한 서식의 요청금지와 함께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를 제출자료와 관련한 질의에도 적용하는 것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외국법인에게 제공되는 다양한 세제혜택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납세의무의 이행이 어려운 다수의 규정들도 여전히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정들로 인해 세제혜택의 효과가 반감되고 의도했던 정책목적도 충분히 달성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외국법인의 실무를 바탕으로 한 현행 세제의 개선방안들을 통해 지속적인 경제발전에 필요한 외국인투자를 활성화시키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논의한 개선방안들은 본 연구에서 고려하지 못한 문제점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이를 제도로 도입하기 위한 선결과제들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추가적인 논의는 이후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하여 본 연구를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며, 보다 나은 조세제도를 정착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 국세청. 2008. 「보도자료 :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 도입 · 시행(2008.9.18.)」.
- 국세청. 2009. 「개정세법 해설」.
- 기획재정부. 2009. 「보도참고자료 : 외은지점 과소자본세제 조정(2008.7.14.)」.
- 기획재정부. 2009. 「보도자료 : 과소자본세제 관련 외화차입금 환산시 적용환율 개선(2009.8.6.)」.
- 김종창. 금융감독원장. 2009. 「외국계 시장참가자 대상 업무설명회 ‘FSS SPEAKS 2009’ 개최사 (2009.6.19.)」.
- 금융감독원. 2009. 「보도자료 : ’08년중 외은지점 영업실적 및 영업기금 동향(2009.2.23.)」.
- 서희열 · 김영옥. 2005. “우리나라 국제조세관련 과세제도의 개편방안”. 세무와회계저널 6(3) : 55 - 82.
- 오운. 2007. “우리나라 국제조세관련 과세제도의 개편방안”. 조세학술논문집 23(2) : 35 - 69.
- 이진영. 2008. “국제적 자본이동과 과소자본세제”. 조세법연구 14(1) : 305 - 323.
- Ernest & Young LLP. 2008. Thin Capitalization Regimes in Selected Countries.
- KPMG. 2005. Branch Capital Attribution for Banks - A Survey of International Practice.

Research on Taxation of Foreign Bank Branches

Byung Wook Jun* · Boram Choi**

〈Abstract〉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AITA” hereafter) is enacted to prevent growing international tax avoidance and competition and, as a result, to increase cooperation among the tax authorities of various countries. Although recent tax law amendments improved interpretation and practical application of several clauses of AITA, there are still a lot of AITA rules too complicated for taxpayers to follow.

Considering complex properties of foreign bank branches—property of foreign corporation and that of banking industry, this study suggests practical plans to revise tax laws to help effectively operate them through the tax system.

First, thin capitalization rules should keep the rate of “limitations of the deduction of interest” stable, and define clearly the concept of “debt” and the condition for it, and allow them to calculate the balance of debt in Korean Won and to classify the “Capital B” as equity, not liabilities.

Second, head office expense allocation rules should define clearly the key concept of “rational relationship” through the tax authority’s information letter and detailed notice, and allow the expense to be calculated with the exchange rate of either transaction date or payment date, not average annual exchange rate. Moreover, the tax authority should make a rule for allocation of domestic head office’s expenses.

Third, deemed capitalization rule should be amended to prepare the case when the closing date of foreign bank’s head office and that of its domestic branch are different, and exempt the branch from additional tax when the branch’s tax return is incorrect due to the head office’s delayed fiscal year—end financial closing.

Last, obligation of documents submission rule should simplify the legal forms in AITA for taxpayers’ understanding, and not allow the forms to be submitted redundantly to the tax authority, and adopt the advance ruling.

<Key words> foreign bank branches, thin capitalization, head office expense allocation, deemed capitalization, obligation of documents submission

* Assistant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Science in Taxation, University of Seoul, First Author

** Ph. D Student, Graduate School of Science in Taxation, University of Seoul, Corresponding Author